



## 정부는 2024. 9. 12. 엘리엇 ISDS 취소소송 1심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2024. 8. 1.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취소사유로 주장한 한-미 FTA 제11.1조 등의 해석 문제가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아 정부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한-미 FTA 제11장 제1절 및 제2절의 주요 관련 조항은 [별첨] 참조

- 정부의 취소소송 근거규정인 영국 중재법 제67조의 ‘실체적 관할 (substantive jurisdiction)’은 동법 제30조에 따라 ▲유효한 중재합의의 존재, ▲사안이 중재합의에 부합할 것 등을 의미합니다.

- 영국 1심 법원은 한-미 FTA 제11.1조가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예.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를 정하는 제1절(Section A)에 위치하는 반면, 중재합의 관련 조항(제11.16조) 등 ISDS 제기의 절차 관련 규정은 제2절(Section B)에 위치하고 있어, 제11.1조는 당사국의 실체적 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일 뿐 중재합의와 같은 ‘실체적 관할’에 관한 조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영국 1심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유사 사안에 관한 ISDS 판정례들을 해당 협정 문언이 한-미 FTA와 상이하거나 영국 중재법상 ‘실체적 관할’ 문제인지 여부와 판단기준이 다르다고 보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판결의 결론에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만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항소를 허가하였습니다.

※ 영국 법원은 1심 담당 판사의 허가(직권 허가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허가)가 있어야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24. 9. 12.(영국시간) 정부는 영국 항소법원에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정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료법, 외부 전문가들(교수, 국내외 로펌, 영국 법정변론변호사 등)과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해당 판결에는 한-미 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기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한-미 FTA 제11.1조 제1항 문언은 “이 장(This Chapter)은 다음에 관하여...”라고 규정하여 제11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협정 당사국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나, 영국 1심 법원은 제11.1조가 제1절(Section A)에만 적용되고 ISDS 제기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제2절(Section 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습니다.

- 한-미 FTA 제11.1조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01조 등을 다룬 다수의 ISDS 판정례는 해당 조항을 ‘관문(gateway)’ 또는 ‘관할 요건’으로 해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을 하였고, 이러한 해석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 한-미 FTA는 ▲당사국이, ▲투자 또는 투자자와 관련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에 적용된다고 제1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하여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하였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항소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되어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엘리엇 ISDS 중재판정에 따른 지연이자는 연복리 5%의 이율이 적용되어 중재판정 선고일(2023. 6. 20.)부터 2024. 9. 1.까지 발생한 지연이자는 약 59억 원입니다. (중재판정 선고일 환율 1달러 = 1,288원 기준)

□ 또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사건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레지나 (044-204-2290)
		담당자	사무관	최단비 (044-200-2291)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조선희 (044-215-7712)
외교부	국제경제국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이송주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한주희 (02-2100-7719)
법무부	국제법무국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과 장	김지연 (02-2110-3331)
		담당자	서기관	엄영신 (02-2110-4244)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재정과	책임자	과 장	박민정 (044-202-3650)
		담당자	사무관	홍승표 (044-202-3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 장	김세진 (044-203-5950)
		담당자	사무관	이아라 (044-203-595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한-미 FTA 제11장 제1절 및 제2절>

**제1절: 투자**

- 제11.1조: 적용범위
-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 나. 적용대상투자, 그리고
  - 다. 제11.8조 및 제11.10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이나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상황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국도 구속하지 아니한다.
-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 나.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이하 생략)

**제2절: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

(중략)

- 제11.16조: 중재 청구 제기
  - 1. 분쟁당사자가 투자분쟁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가. 청구인은, 자기자신을 위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가) 제1절상의 의무
        - 나) 투자인가, 또는
        - 다) 투자계약
- 그리고
- 2) 청구인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그리고
- 나. 청구인은, 자신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피청구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다음의 청구를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 1) 피청구국이 다음을 위반하였다는 것
    - 가) 제1절상의 의무
    - 나) 투자인가, 또는
    - 다) 투자계약
- 그리고
- 2) 그 기업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
- 다만, 청구대상과 청구된 손실이 관련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인수되었거나 설립 또는 인수가 추진되었던 적용대상투자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청구인은 가호1목다) 또는 나호1목다)에 따라 투자계약의 위반에 대한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하 생략)